

HSBC 국제현금카드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 ① 본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에 HSBC 국제현금카드(이하 “카드”라고 함)의 발급을 신청하고 본 약관을 승인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의 카드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 ② 카드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금융결제원의 CD공동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며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카드의 발급)

- ① 카드의 발급은 카드와 연결이 가능한 은행 원화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보유한 고객 중 외국환거래법 상 국내 거주자 신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카드의 신규발급, 재발급 또는 해지를 신청할 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관련 법령 및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승인한 후 처리한다.
- ③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1인당 1개의 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1개당 1개의 연결계좌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은행은 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시 <표1>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제3조 (카드의 이용)

- ① 이용자는 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결제공동망 참가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양자를 “자동화기기”라고 함)를 통하여 연결계좌의 잔액조회,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해외에서 은행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연결계좌의 잔액조회 및 현금인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각 자동화기기의 이용시간은 현지의 이용시간 규정을 따른다.
- ③ 이용자가 해외에서 은행의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시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를 홍콩달러(HKD)로 환산 후 원화(KRW)로 재환산하여 연결계좌에서 출금된다.
- ④ 이용자가 해외에서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시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를 제휴기관에서 미달러(USD)로 환산한 후 은행이 이를 홍콩달러(HKD)로 환산 후 원화(KRW)로 재환산하여 연결계좌에서 출금된다.
- ⑤ 이용자는 카드이용시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은행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카드이용기록을 감독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카드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체 및 인출한도)

- ① 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결제공동망 참가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거래 이용시 적용되는 1회 및 1일 한도 및 수수료는 당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른다.
- ② 해외에서 은행 및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거래 이용시 1일 인출한도는 미화 2,000불(USD 2,000), 연간 인출한도는 미화 20,000불(USD 20,000)로 하며, 인출회수에는 한도가 없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인출한도 및 회수 제한이 사전고지 없이 조정될 수 있다.
- ③ 이용자의 해외인출 거래시에는 <표2>에서 정한 소정의 해외인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의 은행과 제휴한 기관이 부과하는 자동화기기 사용수수료는 은행의 인출수수료와는 별도로 각 자동화기기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부과될 수 있다.
- ④ 동조 제2항에서의 연간 인출한도 산출시 “연간”이라 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의미하며,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 ① 이용자가 제4조에서 정한 인출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은행은 일시적으로 이용자의 카드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금융사고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자동화기기의 고장, 온라인 장애 발생 및 사고발생시
 - 전자금융이용약관 제10조에 명시된 카드 비밀번호 오류 입력 회수 초과, 지급제한, 사고신고 접수시
 - 부정카드사용으로 의심되는 거래 발생 및 거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③ 이용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성이 변동하였음을 은행이 알게된 경우 은행은 해당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④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의 위반 또는 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카드 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은행은 해당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⑤ 은행은 동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자에게 카드의 지급정지 사실을 이용자가 은행에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 이메일, 또는 주소로 연락하여 안내한다.

제6조 (카드의 회수 및 교체)

- ① 이용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성이 변동하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카드 발급 기준 또는 은행내부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에, 이용자는 즉시 은행에 통보하고 카드를 교체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가 은행에 통보하기 전에 은행이 먼저 제1항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 또는 확인한 후 이용자의 카드를 교체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③ 은행이 이용자에게 카드의 교체 또는 회수를 통지 및 요청한 후 이용자가 일정기한 내에 카드를 적절히 교체 또는 회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카드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나 기타 방법으로 통지한다.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용자로부터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손실부담및 면책)

① 이용자는 카드를 분실, 도난, 사취, 강취, 갈취 등을 당한 경우 은행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용자가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은행이 이용자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 제3자가 카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이용자는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③ 이용자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카드를 위·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이용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카드의 훼손, 파손, 오손 등 이용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카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은행이 관리하지 않는 자동화기기의 이상 또는 자동화기기네트워크의 이상 등으로 국내외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표1> 국제현금카드 (재)발급 수수료

	프리미어 고객	일반고객
신규 발급	건당 2,000원	건당 2,000원
재발급	건당 2,000원	건당 2,000원

<표2> 해외인출 수수료

	프리미어 고객	일반고객
해외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시 인출 수수료	면제	2,000원 / 1회
해외 제휴 자동화기기 이용시 인출 수수료	3,000원 / 1회	4,000원 / 1회